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4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범죄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의 정보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중 임직원의 자격·면허 요건을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확대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유관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조에 따른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 신속하고 적
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게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자료의 제
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
을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정보를 해당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변호사·의사”를 “변호사·의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로, “법률·의료 등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다.

1. ~ 5. (생략)

<신설>

5의2. (생략)

6.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조에 따른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4조(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정보를 해당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생 략)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인의 임원·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변호사·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2 (현행 제4조와 같음)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변호사·의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
--- 해당 -----

나. -----

--- 3년 -----
-

다. -----

--- 3년 -----

사람 3. (생략) ② ~ ④ (생략)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인권구조과	
연 락 처	(02) 2110 - 3868